

제263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2019 - 18
- 나. 제 출 자 : 송순효 의원 외 20명
- 다. 제출일자 : 2019년 4월 8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4월 16일

2. 개정이유

고령화 시대에 맞춰 통장의 연령 제한을 상향하고 오피스텔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통장 모집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통·반의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나. 통·반의 명칭 및 구역 (안 제3조)
- 다. 통장의 임기 (안 제4조)
- 라. 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5조)
- 마.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안 제6조 ~ 제7조)

바. 통·반장의 임무와 준수사항 (안 제8조 ~ 제9조)

사. 반상회 및 통·반장회의, 수당 및 사기진작 등 (안 제10조 ~ 제13조)

아. 통장신분증 발급 (안 제14조)

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안 제15조 ~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및 제8조 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4. 8. ~ 4.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통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일부 지역에서 통장지원자가 없어 오랜 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부 개정을 통해 조례를 더욱 체계화, 구체화 하고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안 제4조] 통장의 임기

-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이 가능
-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추가연임 가능
- ※ 기존의 65세 정년규정을 70세로 연장

2)[안 제5조] 통장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 통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심사 시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비상설 기구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함
- 위원으로는
 - 동 행정자치팀장(당연직)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장
 - 그 밖에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함

3)[안 제6조] 통·반장의 위촉

- 통장은 공개모집 후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
 -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포함
 - 해당 통에서 3년 이상 반장 경력자와 봉사활동 우수자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우대
- 반장은 동장이 위촉함

4)[안 제7조] 통·반장의 위촉해제 사유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 ▶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 ▶ 심신장애,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사회적 물의, 민원 등으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 일부 해촉사유의 경우(▶표시 조항)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5)[안 제12조~제13조] 통·반장 실비 수당 및 사기진작 등

-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상여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유공 통·반장을 대상으로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안 제14조] 통장신분증 발급 관련 규정

- 통장 위촉 시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함

7)[안 제15조~제23조]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 규정

-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와 통합함
- ※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 별첨 참고

다. 종합 의견

- 이번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통장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 위원회의 중립성 및 역할을 강화하였고
-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를 본 조례와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의수렴 등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의 임기 및 자격 등을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

내용	기존 조례	개정안
통장 정년 (제4조)	65세	70세
연임규정 (제4조)	2회 연임 가능	2회 이상 공개모집 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추가연임 가능
위원회 명칭 (제5조)	통장추천심사위원회	통장심사위원회
통장심사위원회 (제5조)	추천심사	위촉 및 위촉해제 심사
위원회 위원장 (제5조)	동장	위원 중 호선 (동 행정자치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통장모집조건 확대, 통장심사 우대규정 (제6조)	-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포함 반장 3년 이상, 봉사활동 우수자, 3명이상 다자녀 통장심사 시 우대
통장 위촉해제 (제7조)	-	위촉해제 사유를 더 구체화 하고 일부 해촉사유는 통장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
통장의 임무 (제8조)	-	임무를 더욱 구체화 하고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 위촉해제 하도록 함
통장의 준수사항 (제9조)	-	개인정보 보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추가
사기진작 (제13조)	-	선진지 견학, 문화재 탐방, 산업시찰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추가
통장신분증 (제14조)	-	통장신분증 관련 규정 추가
통장자녀 장학금 (제15조~제23조)	별도 조례	통반 설치조례에 통합
부칙	-	통반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